

#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공고 관련 안내

(중앙회 보험정책국, '24.04.22.)

◎ 관련 근거 :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공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294호, 2024.4.22.)

상기 근거에 의거하여 2024.4.29.부터 시행 예정인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시범사업 시행 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 : 중앙회 보험정책국(☎ 02-2657-5077, 5083, 5036)

- 아 래 -

## ■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주요내용

구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·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 (조제·탕전만 하는 경우 참여 불가)</li> <li>- (한의원)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</li> <li>- (한방병원)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</li> <li>- (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)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·종합병원 (단, 종합병원 중 「의료법」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)</li> </ul> <p>※ 첩약 조제·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(한)약국에서도 한의원,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환자	○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질환	<p>①안면신경마비 ②뇌혈관질환후유증 ③월경통 ④알레르기비염 ⑤기능성소화불량 ⑥요추추간판탈출증</p> <p>※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,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범수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첩약심층변증 방제기술료</td> <td colspan="5">47,140원</td> </tr> <tr> <td>조제탕전료 (10일분 기준)</td> <td>▶자체탕전</td> <td>46,980원</td> <td>▶공동이용탕전</td> <td>34,380원</td> <td>▶약국탕전</td> <td>34,280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약재비</td> <td>▶공통처방_변증</td> <td>46,760원</td> <td>▶공통처방_사상</td> <td>58,030원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▶안면신경마비</td> <td>69,860원</td> <td>▶뇌혈관질환후유증</td> <td>66,470원</td> <td>▶월경통</td> <td>72,510원</td> </tr> <tr> <td>▶알레르기비염</td> <td>42,110원</td> <td>▶기능성소화불량</td> <td>44,860원</td> <td>▶요추추간판탈출증</td> <td>58,330원</td> </tr> </table> <p>※ 행위수가(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, 조제탕전료)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, 조제탕전료(약국탕전) 2024년 약국 환산지수(99.3원) 적용</p>	첩약심층변증 방제기술료	47,140원					조제탕전료 (10일분 기준)	▶자체탕전	46,980원	▶공동이용탕전	34,380원	▶약국탕전	34,280원	약재비	▶공통처방_변증	46,760원	▶공통처방_사상	58,030원			▶안면신경마비	69,860원	▶뇌혈관질환후유증	66,470원	▶월경통	72,510원	▶알레르기비염	42,110원	▶기능성소화불량	44,860원	▶요추추간판탈출증	58,330원
첩약심층변증 방제기술료	47,14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제탕전료 (10일분 기준)	▶자체탕전	46,980원	▶공동이용탕전	34,380원	▶약국탕전	34,28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약재비	▶공통처방_변증	46,760원	▶공통처방_사상	58,03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▶안면신경마비	69,860원	▶뇌혈관질환후유증	66,470원	▶월경통	72,51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▶알레르기비염	42,110원	▶기능성소화불량	44,860원	▶요추추간판탈출증	58,33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급여일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한 의사 1인당) 1일 최대 8건, 월 60건, 연 600건 (*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)</li> <li>○ (환자 1인당) 연간 두 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(최대 10일씩 총 4회) 적용, 이후 전액본인부담(100분의100) 급여 적용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인 부담률	○ 한의원 30%, 한방병원 40% (*질환별 연간 투여기간이 2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기간	○ '24.4월 ~ '26.12월 (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시범사업 관련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붙임 : 「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(2024.4, 보건복지부)